##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14 발의연월일: 2024. 11. 22.

발 의 자: 안호영・이학영・이원택

어기구 • 윤준병 • 주철현

정을호 • 박희승 • 소병훈

박홍배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 립하도록 하고 있음.

이러한 기본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·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·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6조).

법률 제 호

##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융복합산 업과 관련된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~ ⑤	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~ ⑤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
	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융복
	합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의 의
	<u>견을 들어야 한다.</u>
<u>⑥</u> ~ <u>⑧</u> (생 략)	<u>⑦</u> ~ <u>⑨</u> (현행 제6항부터 제8
	항까지와 같음)